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제 · 개정 이유

호스피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의사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설명에 관한 기록 서식 등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확대(안 제2조의2)

호스피스 대상 질환이 질환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암환자에 집중되어 있어 비암성 질환(만성호흡부전)에 대한 서비스 기반이 미흡하므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만성 간경화 외에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대상질환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담당의사의 정보 제공 및

설명과 관련된 서식 등 신설 (안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의2 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10조와 제16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담당의사의 정보 제공과 설명, 환자 또는 가족의 의사 확인,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 과정을 거쳐야 함.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세부 절차와 그 방법, 이와 관련된 기록 작성과 보존을 위한 별지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법 제10조에 따른 담당의사의 정보 제공과 설명에 대해서만 규정

하고 있지 않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한 과정이므로 법 제20조에 따른 기록 보존이 필수적이고 해당 서식의 부재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서식과 함께 서식 작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철회서” 서식 신설 (안 제22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

시행규칙 제정 시 「암관리법」 시행규칙의 호스피스 관련 규정을 동규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그 설명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서면 또는”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철회에 관한 서면”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호스피스 대상 질환의 종류(제2조의2 관련)

분류	질병코드 KCD	질병명
만성 호흡부전	J42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J45	천식
	J46	천식지속상태
	J47	기관지확장증
	J60	탄광부진폐증
	J61	석면및기타광섬유에 의한진폐증
	J62	실리카를함유한먼지에 의한진폐증
	J64	상세불명의진폐증
	J65	결핵과연관된진폐증
	J8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4	기타간질성폐질환
	J96	달리분류되지않은호흡부전
	J98	기타호흡장애

말기환자 등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설명 기록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환자 상태 []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의학적 소견(임종 예측)은 있으나 아직 법에 따른 진단 또는 판단은 받지 않은 환자			
의뢰내용	상담 의뢰자 []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담당의사 [] 기타 ()			
	의뢰 내용 [] 적용대상 [] 연명의료결정절차 [] 기타 ()			
담당의사	성 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설명 및 상담	일자	년 월 일		
	설명 내용			
	설명 결과			
	기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명하고 상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하
부

답당의사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환자 병록 번호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유의사항 참조)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완화의료 전문기관	담당 의료인		면허 종류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환 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〇〇〇〇 호스피스전문기관 귀하

유의사항
1. 이 철회서는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할 때에는 대리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철회하거나 배우자, 직계비속(「민법」상 성인만 해당합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대리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환자의 의사 확인) <u><신 설></u> ① ~ ③ (생 략) 제22조(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u>서면 또는 구두로</u>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u>철회에 관한 서면과 대리</u>	<u>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u> 제13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u>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그 설명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나</u> ---. --- <u>별지 제20호의2서식</u>-----

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